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1518 재산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한국지역난방공사
피 고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2.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변 론 종 결	2014. 11. 28.
판 결 선 고	2014. 12. 24.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별지 1 목록 '처분일' 및 '처분금액'란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나.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2013. 11. 13.자 취득세 13,749,77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의 2013. 11. 19.자 취득세 2,610,2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3.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2012. 2. 29. 대구광역시 조례 제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또한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피고 달서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2012. 3. 30.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 제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라. 이후 피고 달서구청장은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처분일자' 및 '처분금액'란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3. 11. 8. 피고 달서구청장에게 취득세 13,749,770원의 경정청구를,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피고 달성군수'라 한다)에게 취득세 2,610,230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달서구청장은 2013. 11. 13., 피고 달성군수는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0. 피고 달성군수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같은 달 23. 피고 달서구청장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5, 1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세 경감대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이고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이라 한다)는 1985. 1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데, 1991. 12. 31. 기준으로 ㈜한난의 주주 및 그 주식보유비율은 한국전력공사 48.34%, 에너지관리공단 26.04%,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25.62% 등이었다.

2) 원고는 1991. 12. 14.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2. 5. 23. 설립되었고, 그 부칙(법률 제4425호) 제7조, 제8조에 따라 ㈜한난의 모든 재산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한난은 같은 날 해산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10. 1. 29.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는데,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무렵인 2013. 6. 12. 현재 원고의 주주 및 그 주식보유비율은 정부 34.55%, 한국전력공사 19.55%, 에너지관리공단 10.53%,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10.37%, 우리사주조합 4.11%, 일반주주 20.89% 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1)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 12. 31.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75/100(75/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갑 제10 내지 14,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세의 75/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10.37%)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액은 별지 1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원고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법적 성격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유에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규정인 제85조의2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의 범위에서 2013. 12. 31.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에서 75%로 축소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 당시 기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하면서 감면비율만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 2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문언상 원고가 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반드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달서구청장은, 2013. 7. 25.자 재산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대구 달서구 대천동 895 지상 건물 23,321.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증축부분인 4,202.52㎡에 관하여, 원고가 이미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 감면 배제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라 위 증축부분의 면제된 재산세에 상응하는 '도시지역분 1,866,0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조항을 거듭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의 정당한 세액은 46,648,110원[= 50,424,760원 - {(50,424,7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원 - 1,866,090원) × 0.75 × 10.37%}]이라고 주장한다.

을가 제8호증의 1, 2,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23,321.60㎡인데, 그 중 4,202.52㎡은 최초 신축 이후에 증축(2009. 2. 9.자 증축분 4,175.52㎡ 및 2012. 1. 4.자 증축분 27㎡, 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된 부분인 사실, 이후 원고는 구 지방세법(2009. 10. 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아 온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세액 50,424,760원은 재산세 31,127,392원 및 도시지역분 19,297,377원(각 원 단위 이하 절사)을 합산한 금액인데,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합계 1,866,090원은 면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만 규정한 반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세액을 포함한다)의 75/100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도시지역분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달서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 부과 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감면조항에 따라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한 재산세만을 면제하였고 도시지역분 부과세액 1,866,090원은 면제하지 않은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도시지역분 부과세액 1,866,090원도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한 재산세 및 도시지역분을 모두 감경하더라도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달서구청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문중흠

판사 김정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별지 1]

목록

처분청 (피고)	처분일	과세대상	처분금액(원)		정당한 세액(원)	
			재산세	지방 교육세	재산세	지방 교육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2013.7.25.	대구 달서구 대천동 895 건물	50,424,760	6,225,470	46,502,970	5,741,280
	2013.9.6.	대구 달서구 대천동 895 토지	69,246,610	8,146,660	63,860,950	7,513,050

※ 재산세(처분금액, 정당한 세액)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것임.

※ 정당한 세액

○ 계산식: 처분금액 - 경감액(= 처분금액 × 0.75 × 10.37%, 10원 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별지 2]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0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제33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5. 이월 이익잉여금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44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7조(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주)한난"이라 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사가 포괄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주)한난은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주)한난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주)한난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주)한난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 구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2012. 2. 29. 대구광역시 조례 제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2012. 3. 30.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 제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구 지방세법(2009. 10. 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끝>